

#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  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 
김 소 양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 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  
단체도 추가하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
법률」이 개정(2021.1.5.)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 
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 
이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 
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 
하는 것입니다.

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,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본 조례를 통해

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